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1
----------	-----

2001년 9월 일
건설 위원 장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5일,
임원빈의원 외 11인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
회 제4차 건설위원회
(2001년 9월 10일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원빈 의원)

주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평교 ~ 신정제1교
구간 건설노선을 양천구 목동 쪽으로 변경
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
사 실시설계에 의하면 양평교 ~ 신정제1교
구간 도로를 영등포구 양평동·문래동 방면
을 따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그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가시권과 조망권
의 침해는 물론 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따
른 심각한 주거환경의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위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 노선을 당초
계획 원안인 양천구 목동 쪽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타당성 있는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개선에 대한 건의안
을 제출하게 되었음.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 건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 박용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강남지역의 격차형
도로망에 환상형 순환체계를 보완하여 강남
일대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기 개통되
어 있는 강북지역 도시고속도로망과 연계시
켜 보다 효율적인 서울시 통합 간선도로망
을 구축하고자 그 건설계획을 수립 추진하
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그 동안 서울
시에서는 도로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한 '94년 7월 이후 도시

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민 및 전문가
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구체적 건
실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왔으
며, 지난 '99년 7월에는 여러 가지 건설노선
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그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
고 있습니다.

※ 도로건설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안양천 동쪽 방면을 따라 영등포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양평교~신정제1교 구간 주
변지역 주민들과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건설
노선 확정 과정에서의 서울시의 불충분한
지역여건 고려와 미흡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서울시 계획에 따
라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양평동, 문
래동 지역주민들의 가시권 및 조망권 침해
는 물론 극심한 교통혼잡의 초래와 분진,
소음, 매연 등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을 주
장하며 위 구간의 도로선을 변경하여 줄 것
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있어온 강남순환도시고
속도로 양평교~신정제1교 구간 인접 영등
포지역 주민들의 도로계획선 변경요구 민원
과 이에 대한 서울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지역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보완대책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본 건의안에 대한
서울시의 성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개선에관한건의안

강남·북지역의 교통정체와 교통난을 해소하
고 도심지 교통량의 분산·처리 기능을 담당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적절한 도로교통

정책임은 인정하나, 양평교~신정 제1교구간을 영등포지역으로 통과하도록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영등포구 양평동·문래동 지역주민의 가시권 및 조망권의 침해, 건강권, 환경권,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있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노선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며, 합리적인 건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 조정하기 바람.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001. 9.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
동대문운동장상가2002년까지사용연장에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원 번호	63
----------	----

2001년 9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청 원 인 : 홍연표(성동구 성수2가 3동 289-3 성수APT 8동205호) 외 49명
 - 나. 소개의원 : 최명옥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1. 6. 13
 - 라. 회부일자 : 2001. 6. 14
 - 마. 상정일자 : 2001. 9. 5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청원인들은 오랜 기간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여러 점포들을 허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처해 있음.
 - 이에 앞서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청원인들에게 계속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넘어 128%를 인상요구 하였고 청원인들은 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흔쾌히 이에 응함.

- 그렇지만 서울시는 99년 2월 19일 정책회의를 통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토록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 청원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
 - 청원인들은 96년 7월 3일의 서울시 정책회의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2002년 월드컵 특수에 대비하여 점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IMF라는 시련도 겪어야 했음.
 - 동대문운동장 상가는 6~7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처럼 국제적인 거대한 스포츠 타운이 아니었으나 그 동안 청원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인하여 현재에는 국제적인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활발한 스포츠상가의 대표적인 타운으로 성장하였음.
 - 따라서 거대한 스포츠 타운을 형성시킨 청원인 나름대로의 공로도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해 청원인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 상거래 신용도도 높여주는 의미에서 현재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종료기간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청원임.
3. 취지설명 요지(최명옥 의원)
 - 청원인들은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점포를 허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 스포츠용품용 주로 취급하는 이곳 상가는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계속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128%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점포사용 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키로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
 - 그간 청원인들은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 수리와 사업영역 확대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특히 2002년 월드컵기간 중 많은 국가들에 스포츠용품 쇼핑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취재대상이 되고 단채주문 등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